

圖書館法과 圖書館振興法條文對比表

現 行	制 定
<p>● 圖書館法 第1章 總 則</p> <p>第1條 (目的) 이 法은 圖書館의 設置·운영과 奉仕에 필요한 사항을 規定하여 圖書館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社會 各 분야에 대한 知識·情報의 제공 및 流通의 효율화와 國民의 平生教育 및 文化發展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p> <p>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圖書館”이라 함은 圖書館資料를 蒐集·整理·分析·보존·蓄積하여 公衆 또는 特定人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情報利用·調査·研究·學習·敎養等 平生教育 및 文化發展에 기여하는 施設을 말한다. 2. “圖書館資料(이하 “資料”라 한다)”라 함은 圖書館이 蒐集·整理·分析·보존·蓄積하는 圖書·記錄·小冊子·連續刊行物·樂譜·地圖·사진·그림等 各種 印刷資料, 映畫필름·슬라이드·音盤·마이크로形態物·테이프等 視聽覺資料, 電算化資料, 公文書等 行政資料, 鄉土資料 기타 圖書館奉仕를 위하여 필요한 資料를 말한다. 3. “公共圖書館”이라 함은 公衆의 情報利用·敎養·調査·研究 및 教育·文化活動을 增進함을 主된 目的으로 하는 圖書館을 말한다. 4. “大學圖書館”이라 함은 教育法에 의하여 設立된 大學(教育大學·師範大學·放送通信大學·開放大學·專門大學 및 이에 準하는 各種學校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大學教育課程이상의 教育機關에서 敎授와 學生의 研究 및 教育을 지원함을 主된 目的으로 하는 圖書館을 말한다. 	<p>● 圖書館振興法 제1장 總 칙</p> <p>第1條 (目的) 이 法은 圖書館의 設置·운영과 奉仕에 필요한 사항을 規定하여 圖書館의 건전한 육성과 각종 文化·教育施設과의 相互協力 增進을 도모함으로써 社會 各 분야에 대한 知識·情報의 제공 및 流通의 효율화와 文化發展 및 平生教育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p> <p>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圖書館”이라 함은 圖書館資料를 蒐集·整理·分析·보존·蓄積하여 公衆 또는 特定人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情報利用·調査·研究·學習·敎養 등 文化發展 및 平生教育에 이바지하는 施設을 말한다. 2. “圖書館資料”라 함은 圖書館이 蒐集·整理·分析·보존·蓄積하는 圖書·記錄·小冊子·連續刊行物·樂譜·地圖·사진·그림等 各種 印刷資料, 映畫필름·슬라이드·音盤·비디오物·마이크로形態物·테이프 등 視聽覺資料, 電算化資料, 公文書 등 行政資料, 鄉土資料 기타 圖書館奉仕를 위하여 필요한 資料를 말한다. 3. “公共圖書館”이라 함은 公衆의 情報利用·文化活動 및 平生教育을 增進함을 主된 目的으로 하는 圖書館을 말한다. 4. 現행과 같음

現 行	制 定
<p>5. “學校圖書館”이라 함은 高等學校이하의 各級學校 (이에 準하는 各種學校를 포함한다)에서 敎員과 學生의 敎授·學習活動을 지원함을 主된 目的으로 하는 圖書館 또는 圖書室을 말한다.</p>	<p>5. 현행과 같음</p>
<p>6. “專門圖書館”이라 함은 그 設立機關·團體의 所屬員 또는 公衆에게 特定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圖書館奉仕를 제공함을 主된 目的으로 하는 圖書館을 말한다.</p>	<p>6. 현행과 같음</p>
<p>7. “特殊圖書館”이라 함은 <u>그 設立機關·團體의 所屬員이나 身體障礙者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게 學習·敎養·調査 및 研究등을 위한 圖書館奉仕를 제공함을 主된 目的으로 하는 圖書館을 말한다.</u></p>	<p>7. “特殊圖書館”이라 함은 <u>障礙人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게 學習·敎養·調査·研究 및 文化活動 등을 위한 圖書館奉仕를 제공함을 主된 目的으로 하는 圖書館을 말한다.</u></p>
<p>第3條 (圖書館의 종류) 圖書館은 그 設立者에 따라 國立圖書館·公立圖書館·私立圖書館으로 구분하고, 그 設立目的에 따라 國立中央圖書館·公共圖書館·大學圖書館·學校圖書館·專門圖書館 및 特殊圖書館으로 구분한다.</p>	<p>제3조 (圖書館의 종류) 현행과 같음</p>
<p>第4條 (專門圖書館 및 特殊圖書館에 대한 適用排除) <u>專門圖書館 및 特殊圖書館에 대하여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을 適用하지 아니한다.</u></p>	<p>(삭 제)</p>
<p>第5條 (大學圖書館등의 이용제공) ①大學圖書館·學校圖書館·專門圖書館 및 特殊圖書館은 그 設立目的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公衆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②大學圖書館·學校圖書館·專門圖書館 및 特殊圖書館은 당해 圖書館의 特性에 맞는 <u>社會敎育</u>을 실시할 수 있다.</p>	<p>第4條 (大學圖書館의 이용 제공) ① 현행과 같음 ② 大學圖書館·學校圖書館·專門圖書館 및 特殊圖書館은 당해 圖書館의 特性에 맞는 <u>平生敎育</u>을 실시할 수 있다.</p>
<p>第6條 (圖書館의 施設·資料) ①圖書館은 그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設 및 資料를 갖추어야 한다. ②圖書館종류별 施設 및 資料의 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第5條 (圖書館의 施設·資料) ①圖書館은 <u>圖書館資料</u>(이하 “資料”라 한다)의 보존·整理와 <u>利用者의 편의</u>를 위하여 圖書館業務에 적합한 施設 및 資料를 갖추어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p>

現 行	制 定
<p>第7條 (司書職員등) ①圖書館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圖書館運營에 필요한 司書職員·司書教師 또는 實技教師(司書)를 두어야 하며, 社會教育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社會教育專門要員을 둘 수 있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司書職員은 1級正司書·2級正司書 및 准司書로 구분하며 그 資格要件과 養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신 설)</p> <p>(신 설)</p>	<p>第6條 (司書職員등) ①圖書館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圖書館 운영에 필요한 司書職員·司書教師 또는 實技教師(司書)를 두어야 하며, 社會教育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社會教育 專門要員을 둘 수 있다.</p> <p>② 現행과 같음.</p> <p>③國家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司書職員 등의 研修 기타 資質向上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p> <p>第7條 (文化施設과의 協力) 圖書館은 그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文化院·博物館·美術館 등 각종 文化施設과 協力하여야 한다.</p>
<p>第8條 (資料의 交換·移管·폐기 및 除籍) ①각종 圖書館은 資料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資料를 相互 交換 및 移管할 수 있고 利用價値가 喪失 또는 汚損된 資料를 폐기 혹은 除籍할 수 있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交換·移管·폐기 및 除籍의 基準과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第9條 (圖書館發展委員會) ①圖書館의 균형있는 발전과 圖書館機能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重要施策의 수립등에 관하여 文敎部長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文敎部長官소속하에 圖書館發展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設置한다.</p> <p>(신 설)</p>	<p>第8條 (資料의 交換·移管·폐기 및 除籍) ①圖書館은 資料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資料를 相互 交換 및 移管할 수 있고 利用價値가 없게 되거나 汚損된 資料를 폐기 또는 除籍할 수 있다.</p> <p>② 現행과 같음</p> <p>第9條 (圖書館發展委員會) ①圖書館의 균형있는 발전과 圖書館機能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다음의 重要 사항에 관한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文化部長官 소속하에 圖書館發展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圖書館發展基本政策 2. 圖書館協力網의 구성 및 운영 3. 圖書館振興基金의 管理·運用 4. 기타 圖書館振興政策에 관하여 文化部長官이 附議하는 사항
<p>②委員會의 구성 및 職務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第10條 (圖書館振興基金) ①政府는 圖書館의 設立·施設 운영 기타 圖書館振興에 소요되는 資金에 充당하기 위하여 圖書館振興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p>	<p>②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第10條 (圖書館振興基金) ①政府는 圖書館의 設立, 施設 및 資料의 확충, 司書職員의 資質向上, 研究 기타 圖書館 발전에 필요한 資金에 充당하기 위하여</p>

現 行	制 定
<p>을 設置할 수 있다.</p> <p>②基金은 다음 각호의 財源으로 造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政府出捐金 2. 法人·團體 또는 개인으로부터의 寄附金 3. 基金의 운영에서 생기는 收益金 <p>第11條 (基金의 運用·管理) ①基金은 <u>文敎部長官이 運用·管理한다.</u></p> <p>②基金의 造成 및 運用에 관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은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基金造成計劃 2. 基金運用計劃 3. 기타 基金運用上 重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p>③文敎部長官은 基金의 運用·管理에 관한 事務의 일부를 <u>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特別市·直轄市·道の 敎育委員會에 委任할 수 있다.</u></p> <p>④基金의 運用·管理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大統領令으로 정한다.</u></p> <p>第12條 (租稅減免) ①法人·團體 및 개인은 圖書館의 設立·施設·資料 및 운영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u>金錢 기타 財産을 寄附할 수 있다.</u></p> <p>②政府는 第1項에 의하여 圖書館에 寄附한 金錢 기타 財産에 관하여는 <u>租稅減免規制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所得計算의 特例를 適用한다.</u></p> <p>第13條 (類似名稱 使用禁止) 이 法에 의한 圖書館이 아니면 <u>圖書館이라는 名稱을 사용할 수 없다.</u></p> <p>第14條 (圖書館協會) ①圖書館의 設立者는 圖書館 상호간의 <u>情報資料交換 및 業務協助, 圖書館의 운영·管理에 관한 研究, 國際圖書館團體와의 相互協力, 기타 圖書館職員의 資質向上 및 共同利益增進을 위하여 圖書館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u></p> <p>②協會는 法人으로 한다.</p> <p>③協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p>	<p>圖書館振興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할 수 있다.</p> <p>② 現행과 같음</p> <p>第11條 (基金의 管理·運用) ①基金은 <u>文化部長官이 管理·運用한다.</u></p> <p>② 現행과 같음</p> <p>(삭 제)</p> <p>③基金의 管理·運用に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大統領令으로 정한다.</u></p> <p>第12條 (金錢 등의 寄附) 法人·團體 및 개인은 圖書館의 設立·施設·資料 및 운영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u>圖書館 및 基金에 金錢 기타 財産을 寄附할 수 있다.</u></p> <p>(삭 제)</p> <p>第13條 (類似名稱의 사용금지) 이 法에 의한 圖書館이 아니면 <u>圖書館 또는 이와 유사한 名稱을 사용하지 못한다.</u></p> <p>第14條 (圖書館協會) ①圖書館의 設立者는 圖書館 상호간의 <u>資料交換 및 業務協助, 圖書館의 운영·管理에 관한 研究, 國際圖書館團體와의 相互協力 기타 圖書館職員의 資質向上 및 共同利益增進을 위하여 文化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圖書館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u></p> <p>②-③ 現행과 같음</p>

現 行	制 定
<p>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p> <p>④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協會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補助할 수 있다.</p> <p>第2章 國立中央圖書館</p> <p>第15條 (國立中央圖書館) ①<u>教育部長官</u>소속하에 國立中央圖書館을 둔다.</p> <p>②國立中央圖書館은 그 業務를 分掌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分館을 둘 수 있다.</p> <p>第16條 (業務) ① 國立中央圖書館은 다음 各號의 業務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國內外資料의 蒐集·整理·分析·보존·蓄積 및 公衆에의 이용 (<u>신 설</u>) 2. 다른 圖書館과의 <u>情報資料의 流通</u> 3. 각종 書誌의 작성 및 標準化와 國際標準資料番號 制度의 운영 4. 電算化를 통한 國家文獻情報體制 및 圖書館情報 協力網의 統轄 5. 外國圖書館과의 協力 및 資料의 國際交流 6. 다른 圖書館에 대한 業務 및 <u>社會教育活動의 指導·지원</u> (<u>신 설</u>) 7. 圖書館운영에 관한 調査·研究 8. <u>司書職員의 研修</u> 9. 기타 國立中央圖書館으로서의 機能 遂行에 필요한 業務 <p>②國立中央圖書館은 第1項 各號의 業務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第20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業務를 수행할 수 있다.</p> <p>③國立中央圖書館은 그 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國會圖書館과 <u>相互協力</u>한다.</p> <p>第17條 (資料의 제공 및 納本)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 團體가 <u>圖書·連續刊行物</u>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料를 발행 또는 製作한 때에는 그 발행 또는 製作</p>	<p>④國家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協會의 운영에 필요한 經費를 補助할 수 있다.</p> <p>第2章 國立中央圖書館</p> <p>第15條 (國立中央圖書館) ①<u>文化部長官</u> 소속하에 國立中央圖書館을 둔다.</p> <p>② 현행과 같음</p> <p>第16條 (業務) ① 國立中央圖書館은 國家代表圖書館으로서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國內資料의 納本管理 3. 다른 圖書館과의 <u>資料의 流通</u> 4. 현행과 같음 5. 電算化를 통한 國家文獻情報體制 및 圖書館協力 網의 統轄 6. 현행과 같음 7. 다른 圖書館에 대한 業務·文化活動 및 平生教育의 指導·지원 8. <u>讀書의 生活化</u>를 위한 施策의 수립 및 실시 9. 현행과 같음 10. 圖書館 職員에 대한 研修 11. 기타 國家代表圖書館으로서의 機能 수행에 필요한 業務 <p>(삭 제)</p> <p>②國立中央圖書館은 그 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國會圖書館과 <u>協力</u>하여야 한다.</p> <p>第17條 (資料의 제공 및 納本)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 團體가 <u>圖書·連續刊行物·音盤·비디오物</u>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料를 발행 또는 製作한 때에는</p>

現 行	制 定
<p>日로부터 30日이내에 그 資料 2部를 國立中央圖書館에 제공하여야 한다.</p> <p>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者가 圖書·連續刊行物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料를 발행 또는 製作한 때에는 그 발행 또는 製作日로부터 30日이내에 그 資料 2部를 國立中央圖書館에 納本하여야 한다.</p> <p>③國立中央圖書館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納本을 한 者에게 그 資料에 대한 補償을 하여야 한다.</p> <p>④國立中央圖書館長은 納本の 實效를 거두기 위하여 關係部處의 長에게 協助를 요청할 수 있다.</p> <p>⑤納本の 節次·補償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그 발행 또는 製作日로부터 30日이내에 그 資料 2部를 國立中央圖書館에 제공하여야 한다.</p> <p>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를 발행 또는 製作한 때에는 그 발행 또는 製作日로부터 30日이내에 그 資料 2部를 國立中央圖書館에 納本하여야 한다. 改訂版을 발행하거나 製作한 때에도 또한 같다.</p> <p>③國立中央圖書館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納本을 한 者에게 지체없이 納本畢證을 교부하여야 하고 그 資料에 대한 正當한 補償을 하여야 한다.</p> <p>④~⑤ 현행과 같음.</p>
<p>第18條 (國際標準資料番號) ①圖書 또는 連續刊行物을 발행하고자 하는 者는 그 圖書 또는 連續刊行物에 대하여 國立中央圖書館으로부터 國際標準資料番號(이하 “資料番號”라 한다)를 부여받아야 한다.</p> <p>(신 설)</p>	<p>第18條 (國際標準資料番號) ① 현행과 같음.</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番號의 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②國立中央圖書館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出版 등 관련 專門機關·團體 등과 協力하여야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第3章 公共圖書館</p>	<p>第3章 公共圖書館</p>
<p>第19條 (設立) 國家·地方自治團體·民法의 規定에 의한 法人·團體 또는 개인은 公共圖書館을 設立할 수 있다.</p>	<p>第19條 (設立) 國家, 地方自治團體, 民法 기타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이하 “法人”이라 한다), 團體 또는 개인은 公共圖書館을 設立할 수 있다.</p>
<p>第20條 (業務) 公共圖書館은 다음 各號의 業務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資料의 蒐集·整理·分析·보존·蓄積 및 公衆에 의 이용 2. 公衆에 필요한 情報의 제공 <p>(신 설)</p>	<p>第20條 (業務) 公共圖書館은 情報 및 文化·教育센터로서의 機能을發揮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地方行政 및 産業分野에 필요한 情報의 제공

現 行	制 定
<p>(신 설)</p> <p>3. 講演會·鑑賞會·展示會·讀書會 기타 社會教育 및 文化活動의 主催 또는 獎勵</p> <p>4. 다른 圖書館과의 資料交流</p> <p>5. 圖書館業務에 관한 調査·研究</p> <p>6. 기타 公共圖書館으로서의 機能遂行에 필요한 業務</p> <p>第21條 (公共圖書館의 設置·육성등)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地域社會의 教育과 文化發展을 위하여 公共圖書館을 設置·育成하여야 한다.</p> <p>②公共圖書館에는 어린이·老人·身體障者들을 위한 圖書館奉仕에 필요한 施設을 갖추어야 한다.</p> <p>③公共圖書館은 地域住民에 대한 圖書館奉仕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地域의 特性에 따라 分館 또는 移動圖書館을 둘 수 있다.</p> <p>第22條 (公立公共圖書館의 운영) ①地方自治團體가 設立·운영하는 公共圖書館(이하 “公立公共圖書館”이라 한다)의 운영비는 地方自治團體의 一般會計에서 이를 부담한다.</p> <p>②國家는 公共圖書館을 設立한 脂肪自治團體에 대하여 圖書館의 施設·資料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經費의 일부를 補助할 수 있다.</p> <p>(신 설)</p> <p>第23條 (公立公共圖書館의 館長 및 運營委員會) ①公立公共圖書館의 館長은 司書職 또는 行政職으로 補한다.</p>	<p>4. 讀書의 生活化를 위한 計劃의 수립 및 실시</p> <p>5. 講演會·鑑賞會·展示會·讀書會 기타 文化活動 및 平生教育의 主催 또는 獎勵</p> <p>6. 다른 圖書館과의 긴밀한 協力과 資料의 交換 또는 相互貸借의 실시</p> <p>7. 現행과 같음</p> <p>8. 現행과 같음</p> <p>第21條 (公共圖書館의 設立·육성 등)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地域社會의 情報提供 및 文化發展과 平生教育을 위하여 公共圖書館을 設立·육성하여야 한다.</p> <p>②公共圖書館은 어린이·老人·障者들을 위한 圖書館奉仕에 필요한 施設을 갖추어야 한다.</p> <p>③公共圖書館은 모든 地域住民에 대한 圖書館奉仕를 위하여 地域의 特性에 따라 分館·移動圖書館 또는 貸出文庫를 設置하여야 한다.</p> <p>第22條 (公立公共圖書館의 운영) ①地方自治團體가 設立·운영하는 公共圖書館(이하 “公立公共圖書館”이라 한다)의 運營費는 그 設立·운영하는 機關의 會計에서 이를 부담한다. 다만, 教育法 第52條의 規定에 의하여 教育長이 設立·운영하는 公立公共圖書館에 대하여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一般會計에서 그 運營費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p> <p>②國家는 公立公共圖書館을 設立한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圖書館의 設立·資料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經費의 일부를 補助할 수 있다.</p> <p>第23條 (公立公共圖書館의 지원) ①文化部長官은 公立公共圖書館의 균형있는 圖書館發展과 圖書館奉仕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②文化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公立公共圖書館에 대하여 필요한 書類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第24條 (國·公立公共圖書館의 館長 및 運營委員會)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設立·운영하는 公共圖書館의 館長은 司書職으로 補한다.</p>

現 行	制 定
<p>②<u>公立公共圖書館의 設立者는 圖書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圖書館運營委員會를 둔다.</u></p> <p>③<u>圖書館運營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u></p> <p>第24條 (法人등이 設立한 公共圖書館의 登錄) <u>民法의 規定에 의한 法人·團體 또는 개인이 公共圖書館을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第6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을 갖추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郡教育長(서울特別市·直轄市의 教育區廳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登錄하여야 한다.</u></p>	<p>②<u>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公共圖書館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文化施設과의 긴밀한 協助를 위하여 당해 圖書館에 圖書館運營委員會를 둔다.</u></p> <p>③ <u>현행과 같음</u></p> <p>第25條 (法人 등이 設立한 公共圖書館의 登錄등) ① <u>法人·團體 또는 개인이 公共圖書館을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第5條 및 第6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資料 및 司書職員 등에 관한 基準을 갖추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文化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u></p>
<p>(신 설)</p> <p>第25條 (私立公共圖書館의 指導·監督등) ①<u>市·郡教育長은 第24條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公共圖書館(이하 “私立公共圖書館”이라 한다)에 대하여 균형있는 圖書館發展과 圖書館奉仕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指導와 監督을 할 수 있다.</u></p> <p>②<u>市·郡教育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導·監督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私立公共圖書館에 대하여 필요한 書類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u></p> <p>第26條 (是正命令) <u>市·郡教育長은 私立公共圖書館의 設立者가 그 施設 및 운영에 관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設</u></p>	<p>②<u>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公共圖書館의 設立者가 第5條 및 第6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資料 및 司書職員 등에 관한 基準을 유지하지 못한 때에는 文化部長官은 期間을 정하여 是正을 命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u></p> <p>③<u>文化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處分을 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處分의 相對方 또는 그 代理人에게 의견을 陳述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處分의 相對方 또는 그 代理人이 正當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住所不明 등으로 의견을 陳述할 機會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第26條 (私立公共圖書館의 指導·지원) ①<u>文化部長官은 第25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公共圖書館(이하 “私立公共圖書館”이라 한다)의 균형있는 圖書館發展과 圖書館奉仕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指導·지원을 할 수 있다.</u></p> <p>②<u>文化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導·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私立公共圖書館에 대하여 필요한 書類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u></p>
	<p>(삭 제)</p>

現 行	制 定
<p><u>立目的에 위반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그 是正을 命할 수 있다.</u></p> <p><u>第27條 (業務의 정지) 市·郡教育長은 私立公共圖書館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設立者에 대하여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業務의 정지를 命할 수 있다.</u></p> <p>1. 第6條에 規定된 施設基準을 유지하지 못한 때 2.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을 받고도 正當한 이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p> <p><u>第28條 (私立公共圖書館의 廢館申告) ①私立公共圖書館의 設立者가 당해 圖書館을 廢館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轄 市·郡教育長에게 廢館申告를 하여야 한다.</u></p> <p><u>②市·郡教育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받은 때에는 그 圖書館에 관한 登錄을 抹消한다.</u></p> <p><u>第29條 (私立公共圖書館의 補助)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私立公共圖書館의 운영에 필요한 經費의 일부를 補助할 수 있다.</u></p> <p><u>第30條 (使用料·入館料) 公共圖書館은 그 利用者로부터 使用料를 받을 수 있다. 다만, 公立公共圖書館의 入館料에 관하여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u></p> <p><u>第31條 (資料의 제공) 地方自治團體가 圖書·連續刊行物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料를 발행 또는 製作한 때에는 그 발행 또는 製作日로부터 30日이내에 그 資料 2部를 管轄地域안에 있는 公共圖書館에 제공하여야 한다.</u></p> <p>第 4 章 大學圖書館</p> <p><u>第32條 (設置) 教育法에 의하여 設立된 大學 및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大學教育課程이상의 教育機關에는 大學圖書館을 設置하여야 한다.</u></p> <p><u>第33條 (業務) 大學圖書館은 다음 各號의 業務를 수행한다.</u></p> <p>1. 教授와 學生의 研究 및 教育活動에 필요한 資料</p>	<p>(삭 제)</p> <p><u>第27條 (私立公共圖書館의 廢館申告) 私立公共圖書館의 設立者가 당해 圖書館을 廢館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文化部長官에게 廢館申告를 하여야 한다.</u></p> <p>(삭 제)</p> <p><u>第28條 (私立公共圖書館의 補助) ①현행과 같음.</u></p> <p><u>第29條 (使用料) 公共圖書館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利用者로부터 使用料를 받을 수 있다. 다만, 公立公共圖書館의 使用料에 관하여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u></p> <p><u>第30條 (資料의 제공) 地方自治團體가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를 발행 또는 製作한 때에는 그 발행 또는 製作日로부터 30日이내에 그 資料 2部를 管轄地域안에 있는 公共圖書館에 제공하여야 한다.</u></p> <p>第 4 章 大學圖書館</p> <p><u>第31條 (設置) 현행과 같음.</u></p> <p><u>第32條 (業務) 大學圖書館은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u></p> <p>1-3. 현행과 같음.</p>

現 行	制 定
<p>의 蒐集·整理·分析·보존·蓄積 및 그 이용</p> <p>2. 효율적 教育課程의 수행을 위한 지원</p> <p>3. 圖書館利用의 體係의 指導</p> <p>4. 다른 圖書館과의 協力과 情報網을 통한 情報資料의 流通</p> <p>5. 기타 大學圖書館으로서의 機能遂行에 필요한 業務</p> <p><u>第34條 (指導·監督)</u> 大學圖書館은 教育法과 私立學校法 기타 法律의 規定에 의한 당해 大學 또는 教育機關의 監督廳의 指導·監督을 받는다.</p> <p>第 5 章 學校圖書館</p> <p><u>第35條 (設置)</u> 國民學校·中學校·高等學校(이에 準하는 各種學校를 포함한다)에는 學校圖書館을 設置하여야 한다.</p> <p><u>第36條 (業務)</u> 學校圖書館은 다음 各號의 業務를 遂行한다.</p> <p>1. 學校教育에 필요한 資料의 蒐集·整理·分析·보존·蓄積 및 그 이용</p> <p>2. 讀書指導 및 圖書館利用의 指導</p> <p>3. 視聽覺資料의 開發·製作 및 이용</p> <p>4. 기타 學校圖書館으로서의 機能遂行에 필요한 業務</p> <p><u>第37條 (指導·監督)</u> 學校圖書館은 教育法과 私立學校法の 規定에 의한 당해 學校의 監督廳의 指導·監督을 받는다.</p> <p>第 6 章 專門圖書館 및 特殊圖書館</p> <p><u>第38條 (設立등)</u> ①國家·地方自治團體·法人·團體 또는 개인은 專門圖書館 또는 特殊圖書館을 設立할 수 있다.</p> <p>②國家는 特定분야별로 專門的인 圖書館을 設立·운영할 수 있으며, 特定분야별 資料確保 및 圖書館奉仕를 위하여 大學圖書館 및 特殊圖書館중에서 지정</p>	<p>4. 다른 圖書館과의 協力과 圖書館協力網을 통한 資料의 流通</p> <p>5. 현행과 같음.</p> <p><u>第33條 (指導·監督)</u> 현행과 같음</p> <p>제 5 장 學校圖書館</p> <p><u>第34條 (設置)</u> 현행과 같음.</p> <p><u>第35條 (業務)</u> 學校圖書館은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p> <p>1.-4. 현행과 같음</p> <p><u>第36條 (指導·監督)</u> 현행과 같음.</p> <p>第 6 章 專門圖書館 및 特殊圖書館</p> <p><u>第37條 (設立등)</u> ① 현행과 같음</p> <p>(삭 제)</p>

現 行	制 定
<p>하여 專門圖書館의 機能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p>③法人·團體 또는 개인이 公衆이나 身體障礙者의 이용을 主된 目的으로 하는 專門圖書館 또는 特殊圖書館을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第6條에 의한 施設을 갖추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轄 市·郡 教育長에게 登錄하여야 한다.</p> <p>第39條 (指導·監督등) ①市·郡教育長은 第3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專門圖書館 또는 特殊圖書館에 대하여 均衡있는 圖書館發展과 圖書館奉仕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指導와 監督을 할 수 있다.</p> <p>②市·郡教育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導·監督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專門圖書館 또는 特殊圖書館에 대하여 필요한 書類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③文教部長官은 專門圖書館과 特殊圖書館에 대하여 圖書館政策의 수립에 필요한 關係書類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p> <p>第40條 (準用) 第7條第1項의 規定은 專門圖書館 및 特殊圖書館에 대하여, 第26條 내지 第29條의 規定은 第3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專門圖書館 또는 特殊圖書館에 대하여 각각 이를 準用한다.</p> <p>第7章 圖書館情報協力網</p> <p>第41條 (圖書館情報協力網 구성) ①政府는 情報資料의 流通·관리 및 이용등에 관한 圖書館業務의 효율을 높이고 각종 圖書館의 相互協力を 도모하기 위한 連繫體制로서 다음 各號의 機能을 수행하는 圖書館情報協力網(이하 “協力網”이라 한다)을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電算化情報시스템을 통한 情報 및 資料의 流通 2. 書誌編纂·情報處理·奉仕活動 및 施設등의 標準化 3. 分擔收書·相互貸借·綜合目錄·印刷카드制度등 圖書館運營의 효율화 4. 기타 圖書館의 相互協力에 관한 사항 	<p>②法人·團體 또는 개인이 公衆이나 障礙人의 이용을 주된 目的으로 하는 專門圖書館 또는 特殊圖書館을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第5條 및 第6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資料 및 司書職員에 관한 基準을 갖추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文化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p> <p>(삭 제)</p> <p>第38條 (準用) 第25條 第2項·第3項 및 第26條 내지 第28條의 規定은 第37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專門圖書館 또는 特殊圖書館에 대하여 각각 이를 準用한다.</p> <p>第7章 圖書館協力網</p> <p>第39條 (圖書館協力網의 구성) ①文化部長官은 資料의 流通·管理 및 이용 등에 관한 圖書館業務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종 圖書館의 相互協력을 도모하기 위한 連繫體制로서 다음 各號의 機能을 수행하는 圖書館協力網(이하 “協力網”이라 한다)을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電算化情報體系를 통한 情報 및 資料의 流通 2. 現행과 같음. 3. 現행과 같음. 4. 기타 다른 圖書館과의 相互協力에 관한 사항

現 行	制 定
<p>②協力網은 각종 圖書館으로 구성하고 協力網의 효율적 운영과 統轄을 위하여 中央館과 地域代表館을 두되, 中央館은 國立中央圖書館이 된다.</p> <p>第42條 (中央館의 業務) 協力網의 中央館은 다음 各號의 業務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協力網의 各級 地域代表館의 지정 또는 變更 2. 協力網의 機能遂行에 관한 企劃·調整 및 指導 3. 協力網 운영의 統轄 <p>第43條 (地域代表館) ①地域代表館은 서울特別市·直轄市 및 道에 두되, 公共圖書館중에서 中央館이 이를 지정한다.</p> <p>②第1項의 地域代表館은 中央館의 指導 및 調整을 받아 傘下 地域協力網의 운영을 統轄하고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市·郡·區(서울特別市·直轄市の 區에 한한다)에 地方代表館을 둘 수 있다</p> <p>第44條 (지원·協力) 協力網 機能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각종 圖書館의 設立者는 당해 圖書館에 필요한 施設·體制등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각종 圖書館은 中央館 및 地域代表館의 指導에 따라 다른 圖書館과 相互協力하여야 한다.</p> <p>第45條 (協力網의 운영) 協力網의 組織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신 설)</p> <p>第8章 罰 則</p> <p>第46條 (罰金) 第27條(第40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命命에 위반한 者는 1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第40條 (中央館의 業務)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地域代表館의 지정 또는 變更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p>第41條 (地域代表館) ①地域代表館은 서울特別市·直轄市 및 道에 두되, 中央館이 이를 지정한다.</p> <p>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域代表館은 中央館의 指導 및 調整을 받아 傘下地域協力網의 운영을 統轄하고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市·郡 및 區(自治區에 한한다)에 地方代表館을 둘 수 있다.</p> <p>第42條 (協力 등) 協力網機能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圖書館의 設立者는 당해 圖書館에 필요한 施設·體制 등을 갖추어야 하며, 圖書館은 中央館 및 地域代表館의 指導에 따라 다른 圖書館 및 각종 文化施設과 協力하여야 한다.</p> <p>第43條 (協力網의 운영) 協力網의 組織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第8章 補 則</p> <p>第44條 (權限의 委任·委託) 이 法에 의한 文化部長官의 權限의 일부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委任하거나 協會에 委託할 수 있다.</p> <p>第9章 罰 則</p> <p>(삭 제)</p>

現 行	制 定
<p>第47條 (過怠料) ①第24條 또는 第3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圖書館을 開設한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p> <p>②第13條의 規定을 위반한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p> <p>③第17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당해 資料定價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p> <p>④第3項의 資料가 非賣資料인 경우에는 당해 發行資料原價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p> <p>⑤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文教部長官·教育委員會 또는 教育長(이하 “<u>管轄廳</u>”이라 한다)이 賦課·徵收한다.</p> <p>⑥第5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日이내에 管轄廳에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p> <p>⑦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管轄廳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裁判을 한다.</p> <p>⑧第6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 또는 地方稅滯納處分の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8條第1項의 規定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로부터 施行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第45條 (過怠料) ①第25條 第1項 또는 第3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圖書館을 開設한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第17條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당해 資料定價(그 資料가 非賣資料인 경우에는 당해 刊行資料의 原價)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第46條 (過怠料의 賦課·徵收節次) ①第45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文化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の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文化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p> <p>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文化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p> <p>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の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付 則</p> <p>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p> <p>第2條 (다른 法律의 廢止) 圖書館法은 이를 廢止한다.</p>

現 行	制 定
<p>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설립된 특수도서관은 이 법에 의한 特殊圖書館 또는 專門圖書館으로 본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第3條 (圖書館 登錄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施行당 시 종전의 圖書館法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私立公共圖書館·專門圖書館 및 特殊圖書館은 이 법에 의하여 登錄된 것으로 본다.</p> <p>第4條 (國·公立公共圖書館의 館長에 관한 經過措置)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設立·운영하는 公共圖書館의 館長은 第24條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까지는 司書職 또는 行政職으로 補한다.</p> <p>第5條 (圖書館協會에 대한 經過措置) 이 법 施行당 시 從前의 圖書館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圖書館協會는 이 법에 의하여 設立된 것으로 본다.</p> <p>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등) ①著作權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8條중 “圖書館法”을 “圖書館振興法”으로 한다. ②이 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圖書館法을 引用한 경우에는 圖書館振興法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p>

<p>한국도서관협회 출판물안내</p> <p>☎ 137-04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2동 산60-1 ☎ (535) 4868·5616</p>				
성 명	저 자	발행연도	면 수	가 격
한국십진분류법 (본표·상관색인)	분류분과위원회편	1980	1,30	20,000원
한국 목록규칙 (3.1 판)	한국도서관협회	1990	101	4,000원 (반양장)
한국도서관통계 (1990 년 도 판)	한국도서관협회	1990	77	4,500원
도서관학·정보학 용 어 사 전	사공 철 등 편	1986	336	15,000원 (반양장)
한국학자료선정목록	한국도서관협회	1986	331	18,000원